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제 3397호
2017. 3. 2. (목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17-516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... 4

◆ 고 시

제2017-61호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·지형도면 고시
(서울시립대학교) 6

제2017-63호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
고시 11

제2017-65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3

제2017-66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 고시 ... 14

제2017-67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명칭 제정 고시 15

제2017-68호 도시철도 역명 제정 확정 고시 16

제2017-69호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

제2017-70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9

제2017-71호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6

제2017-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37

제2017-73호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6

제2017-74호 도시관리계획(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-1
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49

제2017-75호 「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지구 정비
계획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9

제2017-77호 창동·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67

◆ 공 고

제2017-43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76

제2017-44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76

제2017-466호 2017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77

제2017-467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80

제2017-46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94

제2017-47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03

제2017-48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03

제2017-518호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공모 공고 104
 제2017-5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(주차장) 공사완료 공고 106

◆ 구 고 시

제2017-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(공원) 실시계획인가 고시(광진구) 108
 제2017-20호 도시관리계획(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 고시(광진구) 109
 제2017-24호 도시계획시설[둘리(쌍문)근린공원]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(도봉구) ... 112
 제2017-31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(마포구) 114
 제2017-12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강서구) 116
 제2017-13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강서구) 120
 제2017-29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강남구) 122
 제2017-30호 도시관리계획[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]결정 및
 지형도면 정정고시(강남구) 124

◆ 구 공 고

제2017-1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(공원)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
 공고(광진구) 126
 제2017-217호 도시계획시설(오동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 (강북구) 127
 제2017-231호 도시계획시설(북한산 도시자연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
 열람공고(강북구) 129
 제2017-240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(강북구) 133
 제2017-271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(은평구) ... 135
 제2017-192호 도시계획시설(성산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공고
 (마포구) 136
 제2017-26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『천마공원(대체공원)조성사업』 실시계획
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(송파구) 138
 제2017-284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 (강동구) 139
 제2017-286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(강동구) ... 139

◆ 사업소고시

제2017-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(한강사업본부) 145

◆ 사업소공고

제2017-15호 2017년 유물구입 공고(한성백제박물관) 146

◆ 기 타

제2017-32호 하천점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서울지방국토관리) 148

제2017-33호 하천점용(일시·기간연장)허가 고시(서울지방국토관리청) 148

나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

다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
- 명 칭 : 한남동 블루스퀘어 증축 및 대수선

라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연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 (m)	층수
문화시설	공연장	용산구 이태원로 294	30,250.17	54.59	72.73	17	지하4, 지상4

마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(주)인터파크 씨어터 (대표이사 박진영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

바. 사업의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

사. 사업의 준공예정일

- 당 초 :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
- 변 경 :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(문화시설과, 02-2133-422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72호

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

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5항에 근거한 “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는”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3월 2일
서울특별시장

1. 행사범위

- 가. 행사 성격 :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관측활동에 한함
- 나. 행사 유형
 - 1) 문화행사 : 전시회, 음악회, 콘서트,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
 - 2) 관측행사 : 시민장터(벼룩시장), 바자회,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
- 다. 사용일수 : 연간 60일 이내

2. 관련절차

- 가. 신고인 : 공개공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
- 나. 처리절차
 - 1) 신고인은 공개공지 사용 전 공개공지 사용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주관부

서에 신고해야 함

- 2) 해당 자치구는 신고인의 공개공지 사용요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공개공지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서면으로 공개공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(사용신청 시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)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사용신고서를 교부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. 이 경우 집합건물의 공개공지 사용 동의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
- 3)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공지 사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공개공지 사용 신고서가 미교부되며, 자치구는 신고인에게 미교부 사실과 사유를 통보해야 함
- 4) 공개공지 사용 완료 시 사용자가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 이상 유무에 대하여 공개공지 소유자의 확인서를 받아 사용을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

다. 사용신청 서식 : 붙임 참조

3. 사용 시간 및 일수 산정

가. 1일 사용시간 : 07:00 ~ 22:00

※ 행사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치구 승인을 받아 행사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음

나. 사용일수 산정

1일 사용시간 내 여러 건의 행사 신청 시, 공개공지 사용 위치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용일수는 1일로 산정함

4. 준수사항

가. 시설물 설치

- 1)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함 (통행로 확보)
- 2) 시설물 설치·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함 ※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
- 3) 공개공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

나. '소음·진동 관리법' 에서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

다. 행사장 관리

- 1) 공개공지 내 맨홀, 환기구 등 안전위해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, 특히, 1,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 설치
- 2)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와 청결유지

라. 기타 제한사항

- 1)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됨

- 2) 기타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한사항
 - 5. 행위제한 등
 - 가. 아래 나열한 행위는 제한됨
 - 1) 상업성 광고 및 행사·정치적 행사·종교적 행사
 - ※ 자치구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관측활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음
 - 나. 협의가 필요한 행위
 - 1) 스피커, 앰프 등 음향기기 사용
 - 2) 무대, 천막, 현수막,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
 - 3) 행사 안전요원 동반 여부
 - 4) 스모그, 폭죽, 불꽃놀이, 풍선날리기, 종이꽃가루 등 안전과 관련된 효과 연출물품 사용 여부
 - 5) 기타 시민안전, 보행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등
 - 6. 적용시기 : 2017. 3. 2. 이후
 - 7. 재검토기한 : 이 기준 고시 이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.12.31.까지로 한다
 - 8. 기타사항 :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(☎ 2133 - 7124, 71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붙 임 : 1. [서식1]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 1부.
 2. [서식2] 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1부.
 3. [서식3] 행사계획서 1부.
 4. [서식4]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.
 5. [서식5] 공개공지 사용신고서 1부.
 6. [서식6] 공개공지 사용 신고대장 1부.

【서식 2】

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

1. 시설물 설치

- 가.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(통행로 확보)
- 나. 시설물 설치·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
 - ▷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
- 다. 공개공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

2. 소음기준 : ‘소음·진동 관리법’ 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

- 가. 주거지역
 - 주간(07:00~18:00) : 65dB이하, 저녁(18:00~22:00) : 60dB이하
 - 아침(05:00~07:00) : 60dB이하, 야간(22:00~05:00) : 60dB이하
- 나. 그 밖의 지역
 - 주간(07:00~18:00) : 70dB이하, 저녁(18:00~22:00) : 65dB이하
 - 아침(05:00~07:00) : 65dB이하, 야간(22:00~05:00) : 60dB이하

3. 행사장 관리

- 가. 공개공지 내 맨홀, 환기구 등 안전위해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, 1,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에서 정한 “재해대처계획”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 설치
- 나. 폭죽, 불꽃놀이, 풍선 날리기,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은 반드시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 후 사용
- 다.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와 청결 유지

4. 기타 제한 사항

- 가.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
- 나. 기타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한 사항

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 . . . 신고자 ○○○ (인)

【서식 3】

행 사 계 획 서

행사 개요

- 일 시 : (예시) 2016년 5월 1일(월) 09:00 ~ 5월 31일(금) 18:00
- 장 소 : (예시) 서울시 OO구 OO로 OO 공개공지
- 참석 인원 : (예시) 200명
- 주최·주관 : (예시) OO고등학교
- 책 입 자 : (예시) OO고등학교장 OOO
- 행 사 내 용 : (예시) '서울을 사랑하자' 미술 전시회

행사 일정 및 세부내용

(예시)

행 사 기 간 (사 용 시 간)	행 사 명	내 용	비 고
5월 1일 (09:00~18:00)	시설물 설치	부스 설치, 전시물 설치	1일
5월 2일 ~ 30일 (09:00~18:00)	본 행 사	작품 전시회	29일
5월 31일 (09:00~18:00)	시설물 철거	부스 및 전시물 철거	1일

추진 대책

(예시)

- 참가자 안전 대책
- 이동상인 단속 대책
- 행사 후 청소대책
-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등
- 공개공지 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 등

【서식 4】

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

시설물 설치 내역

시 설 명	규 격(m) (가로×세로×높이)	사 용 용 도	개 수
(예시) 몽골텐트	3×2.5m	홍보부스	100개
(예시) 의 자	-	행사용 의자	400개

※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(동원 장비, 무대, 테이블, 의자, 현수막, 음향시설 등)
 -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“사용용도”란에 기재, 음향시설 :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

원상복구 계획 : 시설물 철거, 쓰레기 수거 방법 등

○ 시설물 철거

(예시)

- 용역계약 업체에서 홍보부스 철거
- 참가업체에서 전시물 철거

○ 쓰레기 수거

(예시)

- 용역 계약업체에서 청소하고 참가업체에서 쓰레기 미수거시 해당업체에 비용 청구

○ 기타사항

【서식 6】

OO구 공개공지 사용 신고대장

신고번호	신고일자	건축물 개요					공개공지 사용신청내용					
		대지위치	건물명	주용도	건축주(연락처)	공개공지(㎡)	사용면적(㎡)	사용기간(사용시간)	사용일수	행사유형	신고자(연락처)	책임자(연락처)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
								년 월 일 : 년 월 일 :				